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종배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음.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에 “지원”을 “보호 및 지원”으로 정비함(안 제명).
- 나.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“지원”을 “보호 및 지원”으로 함(안 제7조의2제1항).
- 라.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의5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2. “소상공인연합회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지원”을 “보호 및 지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5(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 2. “소상공인연합회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 3. “소상공인연합회 지회”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지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. <p>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 ① --- ----- 보호 및 지원----- ----- -----</p>

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5(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)

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5(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)을 신설함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 비용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(본 개정안 제10조의5)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(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) = 350,000

자료 : 2024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